제311회국회 (정기회) 국회쇄신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2년10월24일(수)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개선의 건
2. 국회쇄신과제에 관한 논의
   - 소위심사결과 보고 등

심사된 안건

1. 간사 개선의 건 ····· 1
o 간사(함진규) 인사 ····· 1
2. 국회쇄신과제에 관한 논의 ····· 1
   - 소위심사결과 보고 등

(13시41분 개의)

○위원장 정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회쇄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간사 개선의 건

○위원장 정희수 의사일정 제1항 간사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새누리당 이진복 간사께서 사임하고 함진규 위원을 새로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함진규 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함진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o 간사(함진규) 인사

○위원장 정희수 새로 선임된 함진규 간사님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간단하게……

○함진규 위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초선이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저한테 이렇게 맡겨 주셔서 잘 협의해서 좋은 쇄신안이 나올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분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희수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회쇄신심사소위원회 위원에 변동이 있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이신 이진복 위원님이 사임하고 권은희 위원님이 새롭게 소위 위원으로 보임되어 활동하시겠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희 위원 예.

---

2. 국회쇄신과제에 관한 논의
- 소위심사결과 보고 등

(13시42분)

○위원장 정희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회쇄신과제에 관한 논의를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특위에서 우선적으로 선정한 다섯 가지 국회 쇄신 과제에 대해 공청회를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 후 쇄신심사소위원회에서 네 차례에 걸쳐 논의를 했고 오늘 심사 결과를 보고하게 됐습니다.

국회쇄신심사소위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이에 대해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진규 위원께서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예.

○원혜영 위원 그동안에 국정감사 기간인데 우리 소위원님들이 수고 많이 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지금도 소위 안이, 소위 심사 결과가 어느 정도 완성됐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정리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보고를 받는 기회가, 그런 점에서 우리 위원회가 구성돼서 처음 전체 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하는데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라서 저도 15분 뒤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이 정치쇄신, 국회쇄신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게 크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참 힘들지만 또 중요한 과제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다 생각하고 이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정감사가 오늘 끝나니까 내일모레든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열어서 충분히 보고를 받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지 이렇게 요식행위로서……

○위원장 정희수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혜영 위원 지금 15분 안에 보고받고 논의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맡고 있는 이 과제의 중차대함에 비추어서 국민이 보기에도 너무 소홀한 것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희수 그래서 일단 우리 소위에서 검토됐던 내용을 전체회의에 한번 보고를 드려서, 여기서 금방 마무리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소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전체회의에서 대부분의 다수의 모든 분들이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혜영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런 확인도 하고 의견도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국감,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는 외통위는……

○위원장 정희수 15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이야기 들어 보시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도 토론은 좀 해야……

○원혜영 위원 아니, 지금 국감 중이고 제 소속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2시에 시작되거든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끝났나요?

○함진규 위원 아니,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과보고……

○원혜영 위원 그래서 국감이라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국회 행사를, 위원회를 포기하고 또 이걸 하는 것은, 또 오늘로서 끝나기 때문에……

○함진규 위원 보고만 듣는 거예요.

○위원장 정희수 보고만 한번……

○박범계 위원 보고만 받는 걸로……

○위원장 정희수 그러니까 보고만 한번 받는 걸로 하지요.

○박범계 위원 질의·토론은 다음번에……

○서영교 위원 다 마음속에 그러시군요.

저희 법사위원회는 오늘 종합국감 없는데요.

○위원장 정희수 역시 서 위원께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소위에서 이때까지 뭘 했는지 그것을 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회쇄신과제심사소위원회 함진규 위원입니다.

국회쇄신과제심사소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정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진복 위원님, 이철우 위원님, 본인, 박범계 위원 그다음에 김관용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강동원 위원님, 이상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제도 개선, 원구성 지연 방지,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관련 사항 등 다섯 가지 국회 쇄신과제에 대하여 10월 4일·10일·17일·19일 네 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관련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의원의 겸직에 있어서 허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겸직이 금지되는 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겸직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공익 목적의

명예직만 겸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겸직 금지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이 당선 전부터 겸직금지 직을 가진 경우에는 당선 후에 휴직 또는 사직하도록 하되 대학교수직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사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이 당선 전부터 겸직이 허용되는 직을 가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임기 개시 후 1개월 내에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의장은 이 신고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들은 후 겸직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겸직을 하는 경우 실비 변상 외 보수 수령을 금지하고 겸직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며, 겸직하는 직과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징계 사유로 추가하고 의무 위반 시 출석정지는 그 기간을 90일 이내로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를 강화하였습니다.

영리업무 종사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을 활용한 임대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은 후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영리 업무는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영리 업무에 대한 신고, 신고에 대한 의장의 처리 절차 및 통보, 종사하고 있는 영리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배제, 영리업무 종사 금지 의무 등 위반 시 징계 사유 추가 및 강화는 의원 겸직 금지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겸직 금지 및 영리 업무 종사 금지 규정은 제19대 의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제도 개선 관련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법 시행일 현재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연로회원과 지원금을 받던 중에 공무원 등에 취임하여 지급이 일시 중단된 연로회원은 계속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기존에 연로회원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이나 소득 등 일정한 요건을 두어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을 합산한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상인 경우, 제명 또는 유죄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현행 헌정회 정관에 위임되어 있는 각종 지급제외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기로 하고 헌정회의 장이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구성 지연 방지 관련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면 국회의장을 선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법정기일 내에 선출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섭단체별 상임위원장 배분방식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임위원장(상설특위 포함) 배분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섭단체 소속의원 비율의 정수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상임위원장 수를 배분하고 잔여 상임위원장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으로 1석씩 배분하되 소수점 이하의 수가 같은 경우 정수가 큰 교섭단체에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교섭단체에 배분된 수의 상임위원장을 제1교섭단체부터 우선 선택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교섭단체 간에 교차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차선택 방식을 설명드리면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순으로 하나씩 선택하되 다만 제1교섭단체에 전체 상임위원장 수의 3분의 2 이상이 배분되면 제1교섭단체가 2개의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택한 후 나머지 교섭단체 순으로 하나씩 선택하고 이를 반복하여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선택한 상임위원장을 국회의장에게 통보하고 각 교섭단체가 선택한 상임위원장은 해당 교섭단체 소속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장·상임위원장 선거 관련 사항은 제20대 국회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관련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회 회의장 건물 안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고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이 고발은 취소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장은 폭력행위 발생현장을 촬영·녹음할 수 있고 이 자료를 수사·재판 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회 회의장 건물 안에서 회의 방해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행사한 자는 일정한 처벌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제한되도록 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누구든지 국회 회의장 건물 안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하여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국회 폭력행위 관련 보좌직원 등에 관한 제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직원이 국회 회의장 건물 안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하여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경우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 이외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좌직원 임용 결격사유로 누구든지 국회 회의장 건물 안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하여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경우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이외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 중 야유 등을 금지하기 위하여 의원은 회의 중 고성 등 함부로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 제도 관련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사청문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및 서면답변에 허위로 진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 시 그 의결로 고발하되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 후 1개월 내에 해당 위원회에 소속되었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공직후보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요구권한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대통령실장, 국무총리실장, 국민권익위원장, 국가과학기술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이상 6개의 직위를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국회의원 구속 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구속기간 동안 수당 등의 지급을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 제도 개선 등 기타 국회 쇄신과제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논의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희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토론을 할까요?

○김성곤 위원 하실 말씀 있는 사람만 하시지요.

○위원장 정희수 예, 할 말씀 있는 사람……

권성동 위원님!

○권성동 위원 우선 소위 위원님들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합의 도출하시느라고.

그런데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관련 사항에 조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선 5페이지 보면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누구든지 국회 회의장 건물 안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하여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회의 방해 목적으로 범했다는 것을 누가 확정을 짓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특별구성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는 형법상 규정된 범죄, 즉 폭력범죄로

처벌할 뿐이지 그것이 회의 방해 목적인지 국회 건물 회의장 안인지, 회의 방해 목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해 준단 말입니다, 그거는 구성요건이 없기 때문에.

○서영교 위원 국회의장이 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권성동 위원 국회의장이 고발을 해도……

○서영교 위원 회의방해 목적이라고 고발을……

○권성동 위원 아니, 국회의장이 한다고 하더라고 구성요건에…… 판결문에 회의방해 목적이라는 게 딱 구성요건상 범죄사실로 박혀 있어야만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없는 거예요.

○박범계 위원 전문위원님, 이것이 국회법에 들어 있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국회법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죄송합니다.

○권성동 위원 국회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한 이유가 거기에는 구성요건에 회의장 건물 안에서 회의방해 목적 그다음에 회의장 건물이라는 정의규정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싹 없애 치우고 지금 여기 내용은 공직선거법만 개정해 가지고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위원장 정희수 알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국회법에 국회폭력 관련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나중에 조문화할 때는 폭력행위 금지 조항을 하나 넣으려고 합니다. 넣고서 이 조항을……

○박범계 위원 그러니까 구성요건을 넣으려고 그래요. 이거 한 조항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고 국회법 안에다가……

○권성동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청취불능)

○박범계 위원 예, 옳으신 지적이에요.

○위원장 정희수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또 만약에 문제 있는 게 있으면 지금 의결 수가 또 국감 가야 되니까 이거는 소위에 다시 넘겨서 다시 깔끔하게 하면 되니까……

또 다른 거 이야기할 분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김성곤 위원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소위에서 정말 애를 많이 쓰셔서 정리를 잘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런데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 문제,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또 오늘 저녁부터 장기간 해외출장이 있어서 다음 회의에 못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18대, 그러니까 19대 이전 회원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정리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19대부터 의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예 아무것도 지급을 안 하는 거냐,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겸직금지 등 여러 가지 의원들의 뭐라고 할까, 그동안에 누렸던 권한을 줄이는 대신에 최소한…… 우리 국회의원들도 생활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 이하의 의원에 한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연금과 유사한 시스템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한해서 본인도 얼마 넣고, 4년이 됐든 8년이 됐든 본인도 얼마 넣고 또 국회에서도 얼마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들하고 같은 연금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이 안 다루어진 것 같아서……

○위원장 정희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하여튼 문제되는 것은 다 소위에서 다시 한번 재논의할 의향이 충분히 있으니까 충분히 이야기해 보세요.

또 다른 쪽……

○박범계 위원 그 부분은 소위에서 추후에 또 논의하고 다시 전체회의 열고 여유 있게 하자는 거지요.

○위원장 정희수 그럽시다.

○박범계 위원 제가 많이 깨졌습니다. 국감이라는 핑계 대고 우리 위원님들께 제대로 보고도 안 드리고 상의도 안 드렸다고 해 가지고 많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소위에서……

○함진규 위원 오늘은 소위 위원들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소위에 안 들어가신 분들 의견을 듣고……

○위원장 정희수 아니,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박범계 위원 시간이 없어서 위원님들 가셔야 되고요.

○권성동 위원 다음에 하세요. 30분도 회의 안 할 거면 뭐하러 회의를 소집했어요.

○박범계 위원 보고하는 것도 의미가 크지요.

○위원장 정희수 권 위원님, 할 얘기 있습니까?

○권은희 위원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을 오늘 다 받아서 다음번 소위로 넘기지요.

○위원장 정희수 왜 그러냐 하면……

○金永柱 委員 위원장님, 소위원님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위원님들께서 최대의 공약수를 찾아냈겠지만 다음의 전체회의에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검토를 다시 한번 더 해서 소위에 다시 한번 넘겨서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희수 이러면…… 두 분 간사님들, 잠깐 와 보실래요.

(위원장,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오늘 그동안 소위가 이렇게 많이 활동했다는 것을 전체회의에서 한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몇몇 분들이 의견도 제시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고했던 다섯 가지를 다시 소위에 재회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하는 과정에 일일이 해당 위원님들한테 의견도 다 수렴하면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전체회의에 와야 시간이 절약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永柱 委員 좋습니다.

○김성곤 위원 좋은데 여기에 민감한 내용들이 꽤 있기 때문에 양당 모두 의총에서 전체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기회를 한 번은 줘야 될 겁니다. 거기에서 또 한 번 수렴을 해서……

○권은희 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예.

○권은희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이 맞는데요, 일단은 오늘 시간이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소위로 일정 기한을 주시면 이메일이나 이런 것으로 의견을 일단 주시고 그것을 소위에서 모아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각 당에서 의총에서 얘기를 한다든가 한 번 더 필터링을 하고 의총에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의총은 아직까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의총까지 가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안을 우리 위원회 전체 이름으로 운영위에 넘기기 때문에 운영위에서 또 검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된 거를 의총에 갖고 가야지 우리가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권성동 위원 권한이 없어요. 입법권이 없어요.

○위원장 정희수 예, 입법권이 없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섯 가지 이 결과는 우리 소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번 전체회의에서 재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잠깐만요. 죄송한데 맨 처음에 할 때, 저희가 이 쇄신특위 할 때 '국민이 국회의원들에게 뭘 바라는 거지?' 이렇게 했을 때 뭘 원하는 건지 그 시각을 사실 한번은 훑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행정실에서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무한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짚고, 그래서 사실은 언론에 나오고 국민이 원하는 것에 맞춰서 또 가는 것도 지금 우선 합의가 잘 안 될 때는 그것을 중심으로 가는 것도 필요해서, 그것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누누이 얘기했지만 비행기 공짜 아니고 다 공짜 아닌데 다 공짜에다가 차도 공짜로 나오는 줄 알고, 이런 잘못된 인식 그것을 바로잡는 것을 먼저 하나 하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하기 전에 행정실에서 그것을 정리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정희수 수석, 알았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알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게 우리 서영교 위원님 지적처럼 그것을 적어도 국민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면 어떤 이벤트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직 드래프트 단계밖에 안 되지만 지금 우리가 뭘 논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오해받고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한번 브리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거든요.

○함진규 위원 브리핑은 여야가 같이 공동으로……

○박범계 위원 예, 그러니까 공동으로……

○함진규 위원 해야 이게 설득력 있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서영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MBC를 제가 우연히 집에 가서 봤는데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중앙당 폐지하고 국고보조금 받는 것 폐지하자 그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서영교 위원 아니에요. 그런 특권 얘기 하지 않아요.

○함진규 위원 어제 방송에 하루 종일 했어요.

○위원장 정희수 자, 그러면 가만히 있어 봐요.

그 전에, 그러면 다 결정됐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강 동 원	권 성 동	권 은 희	김 관 영
김 성 곤	金 永 柱	박 범 계	서 영 교
여 상 규	원 혜 영	이 철 우	정 희 수
함 진 규	황 주 홍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 석 전 문 위 원	최 민 수
입 법 심 의 관	이 계 인